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보안 설정

아니요

---

##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토부 김도형 꾸물덜 게 뭐 있냐? 당장 처리해라

내용

은평 경찰서 이주철이 친절하게

1. 2021년 8월부터 은평경찰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위반하고 있고
2. 청사내에 불법건축물 만들어 완제품 팔고 있다고

내부 고발해주었는데, 뭘 관계법령 확인 검토 운운 처리기간 연장하고 자빠진 거냐?  
당장 은평경찰서에 시정명령 내리면 끝나는 걸.

[형법] 제122조, 제151조로 고발 당하고 싶냐?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 첨부 파일

---

## 기피부서 정보

### 기피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 기피유형

공무원 비리

---

### 기피자 정보

이연주, 최지수, 김문수

---

### 기피사유

공무원 비리 은폐 비호하는 쌍것들

---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4-0253859
접수일	2026-04-06 15:13:24
담당자(연락처)	한문희 (02-351-7822)
처리에정일	2026-04-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4-14 09:15:10
처리결과 (답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li> <li>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은평구 연서로 365(불광동 산24)의 '부설주차장 및 건축물 내부 시설의 위법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li> <li>「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케이드를 통한 출입 통제는 법에서 금지하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li> <li>아울러, 「건축법」상 건축물 내부의 칸막이, 의자, 빵·커피·음료 등 제공 시설 (자판기)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li> <li>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02-351-7822), 건축과(☎02-351-75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li> </ol>

##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b>한마디 더</b>	

질문	답변
<p>한문희 개대지 쌍-년아</p> <p>은평경찰서가 위반하고 있는 [주차장법]제19조의 4 제2항-4항 조문 읽어봐라</p> <p>[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p> <p>제2항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p> <p>제4항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p>	